

IFRS

몬스터 재무회계

제3판 1쇄 추록
(2018년 K-IFRS 기준 적용)
금융자산·수익



Preview

본 절에서는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서 후속측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자산의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1. 금융자산의 분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Amortised Cost),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당기손익-공정가치(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로 측정하도록 분류한다. 금융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판단한다.

1단계 :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 <우선판단>

2단계 :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금융자산의 보유목적]

- ① 매도목적[매각] : FVPL금융자산
- ② 계약상 현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원리금 회수 목적) : AC금융자산
- ③ 매도목적[매각]&계약상 현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원리금 회수 목적) : FVOCI금융자산

참고사항 원금과 이자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이다.

이자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된다.

2. 지분상품의 분류

지분상품(주식)의 경우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원리금)되어 있지 않으므로 1단계의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2단계의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금융자산의 보유목적)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지분상품(주식)의 경우 원리금회수 목적의 개념이 없으므로 모두 매도목적으로 분류되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3. 채무상품의 분류

채무상품(채권)의 경우 1단계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원리금)되어 있고, 2단계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금융자산의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원리금 회수목적 이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 매도목적[매각]&원리금 회수 목적이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매도목적[매각] 이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원리금 지급)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현금흐름의 특성)
- ②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원리금 회수 목적)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현금흐름의 특성)
-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원리금회수&매도목적)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현금흐름의 특성)
- ② 금융자산의 매도 목적으로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매도목적)

● 금융자산의 분류 ●

구분		지분상품	채무상품
1단계 원리금으로 구성		×	○
2단계 금융자산보유목적	① 매도목적	FVPL금융자산 ^(주)	FVPL금융자산
	② 원리금 회수목적	-	AC금융자산
	③ 매도목적 & 원리금 회수목적	-	FVOCI금융자산

(주) 예외적으로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가능(한번 지정하면 이후 변경 불가)

참고사항 단기매매항목

금융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 ①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한다.
- ② 최초 인식시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측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③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4. 파생상품의 분류

파생상품의 경우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원리금)되어 있지 않으므로 1단계의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2단계의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금융자산의 보유목적)만 고려하면 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하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단,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¹⁾

1)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자본파트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자.

Preview

본 절에서는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최초측정, 거래원가, 후속측정(평가)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거래원가 및 후속측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차이에 대해서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1.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다만,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에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한다.

정형화된 매입이란 관련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일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입하기로 약정된 날을 말하며, 결제일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날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즉, 단기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이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수취하기로 약정된 명목금액으로 인식하며,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3. 거래원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그러므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의 취득 관련된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의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손익(비용)으로 처리한다**.

거래원가란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를 말하며, 증분원가란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거래원가에는 대리인, 고문, 중개인 및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 및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반면, **금융자산의 처분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처분하는 금융자산에서 차감한다**.

● 금융자산의 거래원가 ●

구분		회계처리
취득관련 거래원가	FVPL금융자산	당기손익(비용)처리
	FVOCI금융자산 AC금융자산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취득원가에 포함)
처분관련 거래원가	모든 금융자산	처분대가에서 차감

Exercise 1 (주)논리는 공정가치 ₩100,000원의 지분상품을 취득하고, 거래원가 ₩1,000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십시오.

[요구사항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인 경우 취득원가

-

[요구사항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인 경우 취득원가

-

Answer 1

[요구사항 1] : ₩100,000

FVPL금융자산인 경우 취득 관련된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차) FVPL금융자산 100,000 (대) 현금 101,000

수수료비용 1,000

[요구사항 2] : ₩101,000

FVPL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AC금융자산)의 경우 취득 관련된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차) FVOCI금융자산 101,000 (대) 현금 101,000

Exercise 2 (주)논리는 20×1년 말 장부금액 ₩110,000인 FVPL금융자산을 ₩120,000에 처분하였다. 처분과 관련된 수수료 ₩1,000이 발생하였다.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Answer 2

$(₩120,000 - ₩1,000) - ₩110,000 = ₩9,000$ (처분손익)

처분관련된 수수료는 처분대가에서 차감한다.

(차) 현금 119,000^(주)

(대) FVPL금융자산 110,000

FVPL금융자산처분이익 9,000

^(주)₩120,000(처분가)-₩1,000(처분수수료)=₩119,000(순처분가)

4.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 상가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

상가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가후원가(원가법)로 측정한다. 상가후원가는 미래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경우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을 당기손익(수익)으로 인식한 후,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 배당과 이자

투자지분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현금배당이 발생하며, 현금배당을 수취한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부의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주식수를 증가시키고, 단가(주당 장부금액)를 감소시킨다.

● 투자지분상품의 후속측정 ●

구분	배당수익	후속측정	평가손익
FVPL금융자산	현금배당(당기손익)	공정가치	당기손익
FVOCI금융자산	주식배당 제외		기타포괄손익

● 투자채무상품의 후속측정 ●

구분	이자수익	후속측정	평가손익
FVPL금융자산	표시이자(당기손익)	공정가치	당기손익
FVOCI금융자산	유효이자(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AC금융자산		상각후원가	×

Exercise 3 (주)논리는 20×1년 1월 1일 공정가치 ₩1,000원인 지분상품을 취득하였다. 투자지분상품의 각 시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1년 1월 1일 공정가치	20×1년 12월 31일 공정가치	20×2년 12월 31일 공정가치
₩1,000	₩1,200	₩1,500

[요구사항 1] FVPL금융자산인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및 회계처리하십시오.

구분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회계처리]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20×2년 12월 31일

(차) (대)

[요구사항 2] FVOCI금융자산인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및 회계처리하시오.

포괄손익계산서		
구 분	20×1년	20×2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회계처리]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20×2년 12월 31일

(차) (대)

Answer 3

[요구사항 1] FVPL금융자산인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구 분	20×1년	20×2년
당기손익	₩200	₩300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손익	₩200	₩300

[회계처리]

20×1년 1월 1일

(차) FVPL금융자산 1,000 (대) 현금 1,000

20×1년 12월 31일

(차) FVPL금융자산 200 (대) FVPL금융자산평가이익(당기손익) 200

20×2년 12월 31일

(차) FVPL금융자산 300 (대) FVPL금융자산평가이익(당기손익) 300

[요구사항 2] FVOCI금융자산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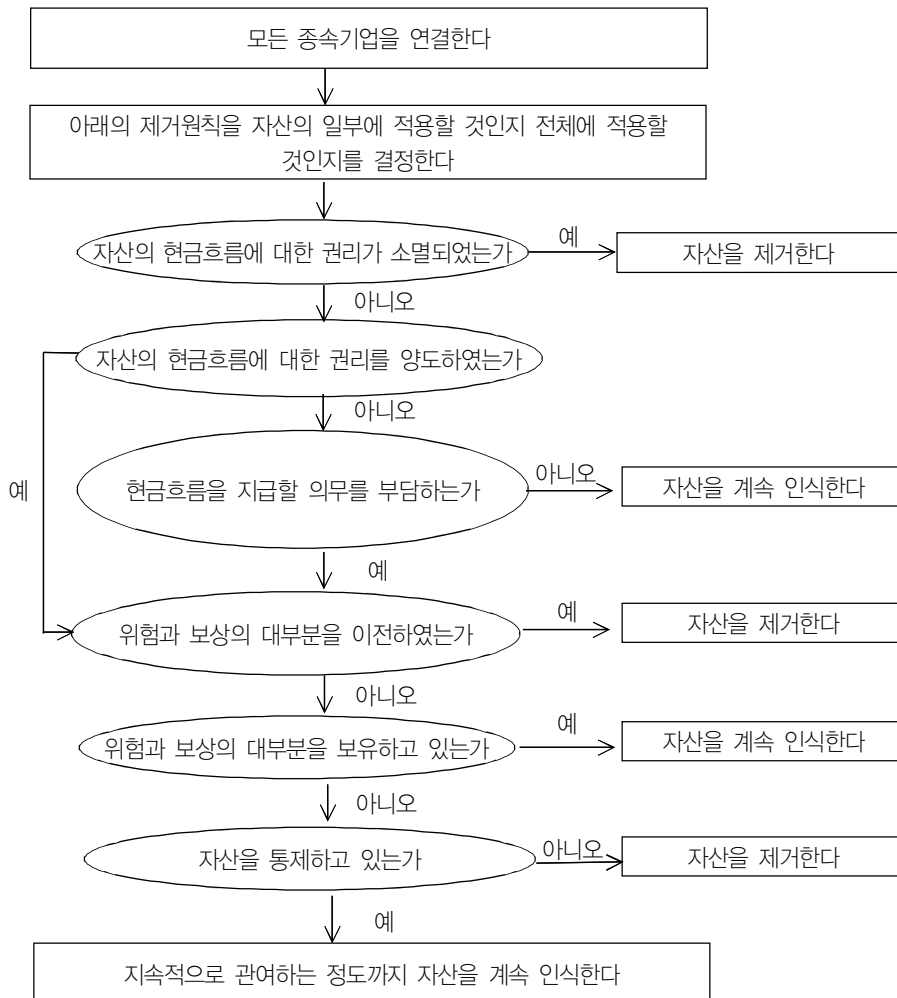
포괄손익계산서		
구 분	20×1년	20×2년
당기손익	-	-
기타포괄손익	₩200	₩300
총포괄손익	₩200	₩300

[회계처리]

20×1년 1월 1일	
(차) FVOCI금융자산 1,000	(대) 현금 1,000
20×1년 12월 31일	
(차) FVOCI금융자산 2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200
20×2년 12월 31일	
(차) FVOCI금융자산 3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300

5. 금융자산의 제거 (심화)

다음은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와 제거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순서도이다.
 다음 순서도에 의해서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를 판단한다.



Preview

투자지분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예외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투자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을 구분하여 취득시점, 평가시점, 처분시점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투자지분상품의 분류

투자지분상품은 원리금으로 구성되어있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의 보유목적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지분상품(주식)의 경우 원리금회수 목적의 개념이 없으므로 모두 매도목적으로 분류되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금융자산의 분류 •

구분		지분상품	채무상품
1단계 원리금으로 구성		×	○
2단계 금융자산보유목적	① 매도목적	FVPL금융자산 ^(주)	FVPL금융자산
	② 원리금 회수목적	-	AC금융자산
	③ 매도목적 & 원리금 회수목적	-	FVOCI금융자산

〈주〉 예외적으로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가능(한번 지정하면 이후 변경 불가)

2. 투자지분상품의 취득원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의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손익(비용)으로 처리한다.

반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인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 투자지분상품의 취득관련 거래원가 ●

구분	회계처리
FVPL금융자산	당기손익(비용)처리
FVOCI금융자산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취득원가에 포함)

3. 투자지분상품의 배당

(1) 현금배당

현금배당은 지분상품의 발행자가 배당을 선언(결의)하는 경우 투자회사는 배당금수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수익)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미수배당금(자산)으로 인식한다. 미수배당금(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은 배당금 수령일에 배당금으로 수령한 현금과 상계한다.

[배당선언일=배당결의일]

(차) 미수배당금(자산) × × ×

(대) 배당금수익(수익) × × ×

[배당수령일]

(차) 현금(자산) × × ×

(대) 미수배당금(자산) × × ×

(2)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지분상품 발행회사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회사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경우 지분상품 발행회사의 자본의 구성내용만 변동될 뿐, 발행회사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부의 증가가 없으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받은 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수와 한 주당 단가만 조정한다.

[투자회사의 주식배당 or 무상증자]

분개없음

(주식수와 단가만 조정)

Exercise 1 (주)논리는 20×1년 2월 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주당 액면금액 ₩500) 100주를 주당 ₩1,100에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1) (주)서준은 20×1년 6월 30일 중간배당 10%를 실시하고, 20×1년 8월 1일 현금배당금을 지급하였다.
- (2) (주)서준은 20×1년 10월 1일 주식배당 10%를 실시하고, 즉시 신주를 발행하였다.
- (3) (주)논리는 20×1년 11월 1일 (주)서준의 주식 50%를 주당 ₩1,200에 처분하였다.

[요구사항] (주)논리의 일자별 회계처리를 하시오.

20×1년 2월 1일

(차) (대)

20×1년 6월 30일

(차) (대)

20×1년 8월 1일

(차) (대)

20×1년 10월 1일

(차) (대)

20×1년 11월 1일

(차) (대)

Answer 1

20×1년 2월 1일

(차) FVPL금융자산 110,000 (대) 현금 110,000

20×1년 6월 30일

(차) 미수배당금 5,000^{<주1>} (대) 배당금수익 5,000

<주1>100주×₩500×10%=₩5,000

20×1년 8월 1일

(차) 현금 5,000 (대) 미수배당금 5,000

20×1년 10월 1일

분개없음[주식수 110주, 단가=₩110,000÷110주]=@₩1,000]

20×1년 11월 1일

(차) 현금 66,000^{<주2>} (대) FVPL금융자산 55,000^{<주3>}
FVPL금융자산처분이익 11,000

<주2>110주×50%×₩1,200=₩66,000

<주3>110주×50%×₩1,000=₩55,000

4. 투자지분상품의 후속측정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 투자지분상품의 후속측정 ●

구분	배당수익	후속측정	평가손익
FVPL금융자산	현금배당(당기손익) 주식배당 제외	공정가치	당기손익
FVOCI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5. 투자지분상품의 처분손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과 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 ②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의 경우 처분손익은 처분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후 수취한 대가와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제거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 후 처분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와 제거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고 처분하는 회계처리의 처분으로 인한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순처분가(처분가-처분비용)-기초공정가치(취득한 연도에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원가)와의 차액으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begin{aligned}
 &[\text{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 처분손익}] \\
 &= \text{순처분가(처분가-처분비용)} - \text{기초공정가치(취득연도 처분시 취득원가)}
 \end{aligned}$$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과 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 ②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 그러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분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평가)한다. 이 경우 재측정손익(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 수취한 대가와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의 차이를 처분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은 자산이 제거되면서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처리가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분상품의 경우 자산이 제거되면서 **기타포괄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본 내에서 다른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누적금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반면, **채무상품의 경우 자산이 제거되면서 재분류조정이 이루어져, 기타포괄손익누적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text{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FVOCI금융자산)처분손익}] = \text{순처분가(처분가-처분비용)} - \text{제거일의 공정가치}$$

그러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FVOCI금융자산)처분손익의 경우 처분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처분손익(당기손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처분비용이 존재하면 처분비용만큼 처분손익(당기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Exercise 1 (주)논리는 (주)서준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 20×1년 1월 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을 ₩10,000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 20×1년 12월 3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 20×2년 12월 3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15,000이다.
- 20×3년 3월 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을 ₩19,000에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다.

[요구사항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회계처리하시오.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20×2년 12월 31일
(차) (대)

20×3년 3월 1일
(차) (대)

[요구사항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각 연도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u>포괄손익계산서</u>	<u>20×1년</u>	<u>20×2년</u>	<u>20×3년</u>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요구사항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회계처리하시오.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20×2년 12월 31일
(차) (대)

20×3년 3월 1일
(차) (대)

[요구사항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각 연도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u>포괄손익계산서</u>	<u>20×1년</u>	<u>20×2년</u>	<u>20×3년</u>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Answer 1

[요구사항 1]

20×1년 1월 1일		
(차) FVPL금융자산 10,000		(대) 현금 10,000
20×1년 12월 31일		
(차) FVPL금융자산 2,000		(대) FVPL금융자산평가이익(수익) 2,000
20×2년 12월 31일		
(차) FVPL금융자산 3,000		(대) FVPL금융자산평가이익(수익) 3,000
20×3년 3월 1일		
(차) 현금 19,000		(대) FVPL금융자산 15,000
		FVPL금융자산처분이익(수익) 4,000

[요구사항 2]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2,000	₩3,000	₩4,000
기타포괄손익	-	-	-
총포괄손익	₩2,000	₩3,000	₩4,000

[요구사항 3]

20×1년 1월 1일		
(차) FVOCI금융자산 10,000		(대) 현금 10,000
20×1년 12월 31일		
(차) FVOCI금융자산 2,0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2,000
20×2년 12월 31일		
(차) FVOCI금융자산 3,0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3,000
20×3년 3월 1일		
(차) FVOCI금융자산 4,0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4,000
현금 19,000		FVOCI금융자산 19,000

[자본내 이전을 선택한 경우]

(차)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9,000	(대) 미처분이익잉여금(자본) 9,000
-----------------------------	------------------------

[요구사항 4]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	-	-
기타포괄손익	₩2,000	₩3,000	₩4,000
총포괄손익	₩2,000	₩3,000	₩4,000

자본변동표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9,000

Exercise 2

(주)논리는 (주)서준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 20×1년 1월 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을 ₩10,000에 현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관련 거래원가로 ₩300을 지급하였다.
- 20×1년 12월 3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 20×2년 12월 3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15,000이다.
- 20×3년 3월 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을 ₩19,000에 현금을 받고 처분하고, ₩200의 처분관련 거래원가를 지급하였다.

[요구사항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회계처리하시오.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20×2년 12월 31일

(차) (대)

20×3년 3월 1일

(차) (대)

[요구사항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각 연도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요구사항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회계처리하시오.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20×2년 12월 31일

(차) (대)

20×3년 3월 1일

(차) (대)

[요구사항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각 연도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Answer 2

[요구사항 1]

20×1년 1월 1일

(차) FVPL금융자산 10,000 (대) 현금 10,300
수수료비용(비용) 300

20×1년 12월 31일

(차) FVPL금융자산 2,000 (대) FVPL금융자산평가이익(수익) 2,000

20×2년 12월 31일

(차) FVPL금융자산 3,000 (대) FVPL금융자산평가이익(수익) 3,000

20×3년 3월 1일

(차) 현금 18,800 (대) FVPL금융자산 15,000
FVPL금융자산처분이익(수익) 3,800

[요구사항 2]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1,700 ^(주)	₩3,000	₩3,800
기타포괄손익	-	-	-
총포괄손익	₩1,700	₩3,000	₩3,800

<주> 수수료비용 ₩300(비용)+FVPL평가이익 ₩2,000(수익)=₩1,700

[요구사항 3]

20×1년 1월 1일

(차) FVOCI금융자산 10,300 (대) 현금 10,300

20×1년 12월 31일

(차) FVOCI금융자산 1,7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1,700

20×2년 12월 31일

(차) FVOCI금융자산 3,0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3,000

20×3년 3월 1일

(차) FVOCI금융자산 4,0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4,000
현금 19,000	FVOCI금융자산 19,000
FVOCI처분손실(비용) 200	현금 200

[자본내 이전을 선택한 경우]

(차)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8,700	(대) 미처분이익잉여금(자본) 8,700
-----------------------------	------------------------

[요구사항 4]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	-	₩200
기타포괄손익	₩1,700	₩3,000	₩4,000
총포괄손익	₩1,700	₩3,000	₩3,800

자본변동표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700 → 미처분이익잉여금 ₩8,700

Exercise 3 (주)논리는 (주)서준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 20×1년 1월 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을 ₩6,000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 20×1년 12월 3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7,500이다.
- 20×2년 12월 3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4,000이다.
- 20×3년 3월 1일 (주)서준의 지분상품을 ₩9,000에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다.

[요구사항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회계처리하시오.

20×1년 1월 1일

(차)	(대)
-----	-----

20×1년 12월 31일

(차)	(대)
-----	-----

20×2년 12월 31일

(차)	(대)
-----	-----

20×3년 3월 1일

(차)	(대)
-----	-----

[요구사항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각 연도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요구사항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회계처리하시오.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20×2년 12월 31일

(차) (대)

20×3년 3월 1일

(차) (대)

[요구사항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각 연도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Answer 3

[요구사항 1]

20×1년 1월 1일

(차) FVPL금융자산 6,000 (대) 현금 6,000

20×1년 12월 31일

(차) FVPL금융자산 1,500 (대) FVPL금융자산평가이익(수익) 1,500

20×2년 12월 31일

(차) FVPL금융자산평가손실(비용) 3,500 (대) FVPL금융자산 3,500

20×3년 3월 1일

(차) 현금 9,000 (대) FVPL금융자산 4,000
FVPL금융자산처분이익(수익) 5,000

[요구사항 2]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1,500	(₩3,500)	₩5,000
기타포괄손익	-	-	-
총포괄손익	₩1,500	(₩3,500)	₩5,000

[요구사항 3]

20×1년 1월 1일 (차) FVOCI금융자산 6,000	(대) 현금 6,000
20×1년 12월 31일 (차) FVOCI금융자산 1,5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1,500
20×2년 12월 31일 (차)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1,500 FVOCI금융자산평가손실(자본) 2,000	(대) FVOCI금융자산 3,500
20×3년 3월 1일 (차) FVOCI금융자산 5,0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손실(자본) 2,000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3,000

[자본내 이전을 선택한 경우]

(차)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3,000	(대) 미처분이익잉여금(자본) 3,000
-----------------------------	------------------------

[요구사항 4]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	-	-
기타포괄손익	₩1,500	(₩3,500)	₩5,000
총포괄손익	₩1,500	(₩3,500)	₩5,000

자본변동표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

Preview

투자채무상품의 경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을 구분하여 취득시점, 평가시점, 처분시점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투자채무상품의 분류

채무상품[채권]의 경우 1단계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원리금)되어 있고, 2단계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금융자산의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원리금 회수목적 이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 매도목적[매각]&원리금 회수 목적이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매도목적[매각]이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원리금 지급)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현금흐름의 특성)
- ②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원리금 회수 목적)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현금흐름의 특성)
-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원리금회수&매도목적)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현금흐름의 특성)
- ② 금융자산의 매도 목적으로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매도목적)

● 투자채무상품의 분류 ●

구분	채무상품	이자수익
1단계 원리금으로 구성	○	
2단계 금융자산보유목적	① 매도목적	FVPL금융자산 표시이자
	② 원리금 회수목적	AC금융자산 유효이자
	③ 매도목적 & 원리금 회수목적	FVOCI금융자산 유효이자

2. 투자채무상품의 취득원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의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손익(비용)으로 처리한다.

반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인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 투자채무상품의 취득관련 거래원가 ●

구분	회계처리
FVPL금융자산	당기손익(비용)처리
FVOCI금융자산 or AC금융자산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취득원가에 포함)

투자채무상품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 채무상품의 매입금액에는 직전 이자지급일 부터 취득일까지의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채무상품의 구입금액 중 직전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미수이자의 과목으로 구분하고,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3. 투자채무상품의 이자수익

투자채무상품의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따라서, 투자채무상품을 할인 또는 할증 취득하면 최초 취득원가와 만기금액의 차액을 상각하여 취득원가에서 가감하며, 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이 가감된 금액을 상각후원가라고 한다. 이러한 상각후원가는 미래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begin{aligned} \text{투자채무상품 상각후 원가} &= \text{최초취득원가} + \text{할인발행차금상각액} - \text{할증발행차금상각액} \\ &= \text{미래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한 금액} \end{aligned}$$

다만, 투자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표시이자로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의 경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유효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방법과 표시이자로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방법과 평가이익과 이자수익을 합한 당기손익은 두 방법이 일치하므로 이자계산을 간단한 표시이자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text{채무상품의 취득원가} = \text{채무상품의 매입금액}^{(주)} - \text{취득일까지의 경과이자[미수이자]}$$

(주) 채무상품의 매입금액에는 미수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4. 투자채무상품의 후속측정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자수익은 표시이자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 상가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

상가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원가법)로 측정한다. 상각후원가는 미래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경우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채무상품)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을 당기손익(수익)으로 인식한 후,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투자채무상품의 후속측정 ●

구분	이자수익	후속측정	평가손익
FVPL금융자산	표시이자(당기손익)	공정가치	당기손익
FVOCI금융자산	유효이자(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AC금융자산		상각후원가	×

5. 투자채무상품의 처분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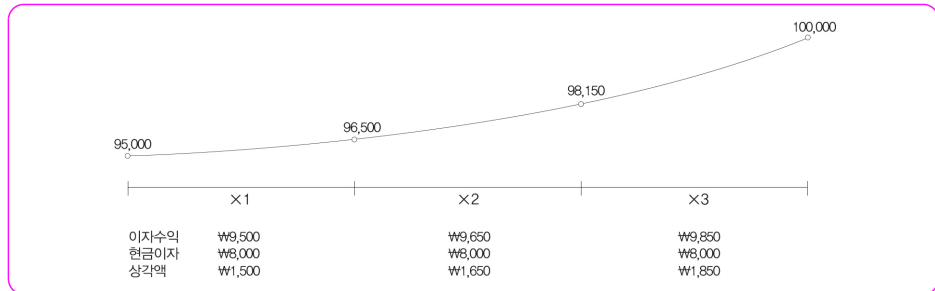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과 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 ②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 그러므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순처분가(처분가-처분비용)에서 처분시점의 상각후원가와와의 차액으로 측정한다.

$$\begin{aligned} & \text{[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 처분손익]} \\ & = \text{순처분가(처분가-처분비용)} - \text{상각후원가(처분시점)} \end{aligned}$$

Exercise 1 (주)논리는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인 (주)한국의 사채를 ₩95,000 취득하고, 취득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주)예준의 사채의 만기는 20×3년 말이고 취득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 표시이자율은 연 8%이며 이자지급일은 매년 말이다. 20×3년 초 동 사채를 ₩99,000에 처분하였다.



[요구사항 1] 각 시점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20×2년 12월 31일

(차) (대)

20×3년 1월 1일

(차) (대)

[요구사항 2] 20×3년 1월 1일의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Answer 1

[요구사항 1]

20×1년 1월 1일	
(차) AC금융자산 95,000	(대) 현금 95,000
20×1년 12월 31일	
(차) 현금 8,000	(대) 이자수익 9,500
AC금융자산 1,500	
20×2년 12월 31일	
(차) 현금 8,000	(대) 이자수익 9,650
AC금융자산 1,650	
20×3년 1월 1일	
(차) 현금 99,000	(대) AC금융자산 98,150
	AC금융자산처분이익(수익) 850

[요구사항 2] 20×3년 1월 1일의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99,000(\text{순처분가}) - ₩98,150(\text{상각후원가}) = ₩850(\text{AC금융자산처분이익})$$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과 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 ②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 그러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의 처분하는 경우 처분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후 수취한 대가와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을 처분할 때는 처분시점까지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은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FVOCI채무상품)의 처분손익은 순처분가와 상각후원가(처분시점)와의 차액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FVOCI채무상품)의 처분손익은 상각후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의 처분손익과 일치하게 된다.

$$[\text{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채무상품)처분손익}] = \text{순처분가(처분가-처분비용)} - \text{상각후원가(처분시점)}$$

Exercise 2 20×1년 초 (주)논리는 4년 만기의 채무상품(액면이자율 연 8%, 액면금액 ₩500,000)을 ₩475,000 (유효이자율 연 10%)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이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500,000이었다.

[요구사항 1] 각 시점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요구사항 2] 20×1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Answer 2

[요구사항 1]

20×1년 1월 1일

(차) FVOCI금융자산 475,000 (대) 현금 475,000

20×1년 12월 31일

(차) 현금 40,000^(주1) (대) 이자수익(수익) 47,500^(주2)

FVOCI금융자산 7,500

(차) FVOCI금융자산 17,5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17,500^(주3)

<주1> ₩500,000×8%=₩40,000

<주2> ₩475,000×10%=₩47,500

<주3> ₩500,000-(₩475,000×1.1-₩40,000)=₩17,500

[요구사항 2] 20×1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당기손익	이자수익	₩475,000×10%	=₩47,500
기타포괄손익	평가이익	₩500,000-(₩475,000×1.1-₩40,000)	=₩17,500
총포괄손익			₩65,000

• Tip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의 계산 •

-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누계액 = 기말FV - 상각후원가
- 2차연도 평가손익 = 2차연도 평가손익누계액 - 1차연도 평가손익누계액

Exercise 3 보고기간 말인 12월 31일인 (주)논리는 A사가 발행한 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8%인 채무상품을 20×1년 1월 1일 ₩92,418(유효이자율 연 10%)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동 채무상품의 만기일은 20×5년 12월 31일이며, 이자는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한다. (주)논리는 이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20×1년 말 ₩94,000이고, 20×2년 말 ₩98,000일이다. 20×3년 1월 1일 이 채무상품을 ₩100,000에 처분하였다.

[요구사항 1] 각 시점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20×2년 12월 31일

(차) (대)

20×3년 1월 1일

(차) (대)

[요구사항 2] 각 연도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Answer 3

[요구사항 1]

20×1년 1월 1일

(차) FVOCI금융자산 92,418 (대) 현금 92,418

20×1년 12월 31일

(차) 현금 8,000^(주1) (대) 이자수익(수익) 9,242^(주2)

FVOCI금융자산 1,242

<주1> ₩100,000 × 8% = ₩8,000

<주2> ₩92,418 × 10% = ₩9,242

(차) FVOCI금융자산 34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340^(주3)

<주3> ₩94,000 - (₩92,418 × 1.1 - ₩8,000) = ₩340

20×2년 12월 31일

(차) 현금 8,000 (대) 이자수익(수익) 9,366^(주4)

FVOCI금융자산 1,366

<주4> ₩93,660×10%=₩9,366

(차) FVOCI금융자산 2,634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2,634^(주5)

<주5> ₩2,974(20×2년 말 평가손익누계)-₩340(20×1년 말 평가손익누계)

20×3년 1월 1일

(차) FVOCI금융자산 2,000 (대)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2,000

(차)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자본) 4,974 (대) FVOCI금융자산처분이익(수익) 4,974^(주6)

<주6> ₩100,000(처분이익)-₩95,026(20×3년 초 상각후원가)=₩4,974(20×3년 초 평가손익누계액)

구 분	20×1년 초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초
상각후원가	₩92,418	₩93,660	₩95,026	₩95,026
공정가치	₩92,418	₩94,000	₩98,000	₩100,000
평가손익누계 (공정가치-상각후원가)	₩0	₩340	₩2,974	₩4,974
평가손익 (기말평가손익누계 -기초평가손익누계)	₩0	₩340	₩2,634	₩2,000

[요구사항 2]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20×3년
당기손익	₩9,242	₩9,366	₩4,974
기타포괄손익	₩340	₩2,634	(₩2,974)
총포괄손익	₩9,582	₩12,000	₩2,000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과 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②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의 경우 처분손익은 처분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후 수취한 대가와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제거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 후 처분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와 제거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고 처분하는 회계처리의 처분으로 인한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순처분가(처분가-처분비용)-기초공정가치(취득한 연도에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원가)와의 차액으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begin{aligned} & \text{[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처분손익]} \\ & = \text{순처분가(처분가-처분비용)} - \text{기초공정가치(취득연도 처분시 취득원가)} \end{aligned}$$

Exercise 4 12월 말에 결산일인 (주)논리는 채무상품(20×1년 1월 1일 만기 3년, 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12%,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을 20×1년 5월 1일 ₩100,000(미수이자 포함)에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12월 31일 공정가치 ₩110,000이다.

[요구사항 1] 각 시점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요구사항 2]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Answer 4

[요구사항 1]

20×1년 1월 1일

(차) FVPL금융자산 96,000 (대) 현금 100,000

미수이자 4,000^(주1)

<주1> 미수이자 ₩100,000×12%×4/12=₩4,000

20×1년 12월 31일

(차) 현금 12,000 (대) 이자수익(수익) 8,000^(주2)

미수이자 4,000

<주2> ₩100,000×12%×8/12=₩8,000

(차) FVPL금융자산 14,000 (대) FVPL금융자산평가이익(수익) 14,000^(주3)
 <주3> ₩110,000(기말공정가치-기초공정가치(or 취득연도는 취득원가)-₩96,000=₩14,000

[요구사항 2]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당기손익	이자수익	₩100,000 × 12% × 8/12 = ₩8,000
	평가이익	₩110,000 - ₩96,000 = ₩14,000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22,000

Preview

금융자산의 손상은 지분상품의 경우 손상의 인식이 없으며, 채무상품 중 AC금융자산과, FVOCI금융자산만 손상을 인식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의 손상 회계처리시 신용이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신용위험이 발생한 금융자산과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1. 손상차손의 인식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은 신용손실위험이 없으므로 손상의 대상이 아니며,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의 경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므로 손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손상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채무상품에 해당하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만 해당이 된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의 손상 회계처리시 신용이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신용위험이 발생한 금융자산과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신용위험이 발생한 금융자산이란 미래의 현금흐름의 감소는 없으나, 신용위험의 증가로 미래예상현금이 감소한 것을 말하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이란 미래현금흐름이 감소한 것을 말한다.

2. 손상 관련 용어정리

(1) 현금부족액

계약에 따라 수취하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이다.

$$\text{현금부족액} = \text{계약상 수취할 금액} - \text{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신용손실

현금부족액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다만,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신용조정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text{신용손실} = \text{현금부족액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한 금액}$$

(3) 기대신용손실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자산의 신용손실을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신용손실을 말한다. 기대신용손실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구분된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말하며,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말한다.

$$\text{기대신용손실} = \text{신용손실} \times \text{개별채무불이행 발생확률}$$

3. 기대신용손실의 적용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총당금을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총당금을 측정한다.

• 기대신용손실의 적용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적용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적용

보고기간 말에 인식해야 하는 금액으로 손실총당금을 조정하기 위해 기대신용손실액 혹은 기대신용손실환입액을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금융자산]의 경우 손실총당금(자산차감)계정을 사용한다.

$$[\text{수정전 손실총당금} < \text{수정후 손실총당금}]$$

$$(\text{차}) \text{ 금융자산손상차손(비용)} \times \times \times \quad (\text{대}) \text{ 손실총당금(자산차감)} \times \times \times$$

$$[\text{수정전 손실총당금} > \text{수정후 손실총당금}]$$

$$(\text{차}) \text{ 손실총당금(자산차감)} \times \times \times \quad (\text{대}) \text{ 금융자산손상차손(수익)(자산차감)} \times \times \times$$

• 용어정리 •

$$\text{금융자산} \times \times \times : \text{총장부금액}$$

$$\text{손실총당금} (\underline{\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 \text{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의 손실총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text{수정전 손실충당금} < \text{수정후 손실충당금}]$$

$$(\text{차}) \text{ 금융자산손상차손(비용)} \times \times \times \quad (\text{대}) \text{ FVOCI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times \times \times$$

$$\text{재무상표태 기타포괄손익} - \text{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누적금액)}$$

$$= \text{보고기간말 공정가치} - \text{상각후원가(총장부금액} - \text{손실충당금)}$$

4.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것이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정보를 포함한다.

-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⑥ 이미 발생한 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창출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추정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조정금액은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즉, 기대신용손실 계산시 신용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률을 곱하여 계산하고,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확률을 곱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text{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text{자산의 총장부금액}^{(주)} - \text{추정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주) 손실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

5. 이자수익

원칙적으로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상각후원가에 이자수익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 이자수익 ●

구 분	이자수익
신용위험이 발생한 금융자산	총장부금액×최초의 유효이자율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을 후속인식시	상각후원가×최초의 유효이자율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을 최초인식시	상각후원가×신용조정 유효이자율

Exercise 1 (주)논리는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인 (주)한국의 사채를 ₩95,000 취득하고, 취득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주)예준의 사채의 만기는 20×3년 말이고 취득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 표시이자율은 연 8%이며 이자지급일은 매년 말이다. 20×1년 말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3,000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였다. 20×2년 말 기대신용손실 ₩4,000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였다.

[요구사항 1] 각 시점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20×1년 1월 1일

(차) (대)

20×1년 12월 31일

(차) (대)

(차) (대)

20×2년 12월 31일

(차) (대)

(차) (대)

[요구사항 2]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u>포괄손익계산서</u>	<u>20×1년</u>	<u>20×2년</u>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요구사항 3]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u>재무상태표</u>	<u>20×1년 말</u>	<u>20×2년 말</u>
AC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상각후원가		

Answer 1

[요구사항 1]

20×1년 1월 1일
 (차) AC금융자산 95,000 (대) 현금 95,000

20×1년 12월 31일
 (차) 현금 8,000 (대) 이자수익 9,500^(주1)
 AC금융자산 1,500
 <주1> ₩95,000 × 10% = ₩9,500

(차) 손상차손 3,000 (대) 손실충당금 3,000

20×2년 12월 31일
 (차) 현금 8,000 (대) 이자수익 9,650^(주2)
 AC금융자산 1,650
 <주2> ₩96,500(총장부금액) × 10% = ₩9,650

(차) 손상차손 1,000^(주3) (대) 손실충당금 1,000
 <주3> ₩4,000(수정후 손실충당금) - ₩3,000(수정전 손실충당금) = ₩1,000

[요구사항 2]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당기손익	이자수익 : ₩9,500	이자수익 : ₩9,650
기타포괄손익	손상차손 : (₩3,000)	손상차손 : (₩1,000)
총포괄손익	₩6,500	₩8,650

[요구사항 3]

재무상태표	20×1년 말	20×2년 말
AC금융자산	₩96,500	₩98,150
(손실충당금)	(₩3,000)	(₩4,000)
상각후원가	₩93,500	₩94,150

Preview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투자지분상품은 재분류 할 수 없고, 투자채무상품이 재분류 대상이 된다. 투자채무상품의 분류에 따른 재분류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1. 금융자산재분류의 의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한다. 사업모형의 변경은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하며, 외부나 내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고위경영진이 결정해야 하고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이고 외부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모형의 변경은 사업계열의 취득, 처분, 종결과 같이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만 생길 것이다.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투자지분상품은 재분류 할 수 없고, 투자채무상품이 재분류 대상이 된다.** 금융자산의 재분류하는 경우에 그 재분류는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재분류 전에 인식한 손익이나 이자는 소급 작성하지 않는다.

• 금융자산 재분류 •

구 분	금융자산 재분류
투자지분상품	×
투자채무상품	○

(1) FVPL금융자산 ⇔ AC금융자산 or FVOCI금융자산

재분류일 공정가치를 새로운 금융자산 취득원가로 하며, 재분류 시점의 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AC금융자산 ⇔ FVOCI금융자산

처음부터 FVOCI금융자산 또는 처음부터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2. 재분류 전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FVPL금융자산)인 경우

금융자산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금융자산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결국, **재분류일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금융자산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다른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의 **유효이자율**은 **재분류일의 금융자산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산정**(재분류시점의 현행시장이자율)한다.

3. 재분류 전에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AC금융자산)인 경우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금융자산의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금융자산의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재분류로 인해서 조정되지 않는다. 즉,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재분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4. 재분류 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FVOCI금융자산)인 경우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재분류일에 금융자산을 측정한다.** 이러한 조정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분류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즉, **최초의 유효이자율은 재분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Preview

수익인식이란 수익이 귀속하는 보고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인식 5단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수익인식에 대해서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수익인식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수익인식기준

수익의 인식이란 수익의 발생시점에 관한 것으로 수익이 귀속되는 보고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즉, 판매자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금전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될 예상하는 대가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으로 이를 실현주의라고 한다.

2. 수익인식 5단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 수익인식 5단계 •

- 1단계 : 계약의식별
- 2단계 : 수행의무식별
- 3단계 : 거래가격산정
- 4단계 : 거래가격배분
- 5단계 : 수행의무이행

수익인식 5단계를 인식과 측정으로 구분하면 1단계, 2단계, 5단계는 인식과 관련되며, 3단계, 4단계, 5단계는 측정과 관련된다.

(1)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하며, 그 재화나 용역들이 구별된다면 약속은 수행의무이고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3) 3단계 :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거래가격은 고객이 지급하는 고정된 금액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변동대가를 포함하거나 현금 외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다. 거래가격은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이자)가 포함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을 조정하며,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가격에서 조정한다. 대가가 변동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추정한다.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인식된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4)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각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만, 개별 판매가격을 관측할 수 없다면 추정해야 한다. 거래가격에 계약의 일부분에만 관련되는 할인액이나 변동대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할인액이나 변동대가를 일부 수행의무에만 배분한다.

(5)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이행하는 대로 즉,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인식하는 수익금액은 이행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다.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하거나, 기간에 걸쳐 이행한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수익은 그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3. 수행의무의 식별

(1)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말한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 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 ②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 ③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 ④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⑤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이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집행 가능성은 법률적인 문제이다. 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과 과정은 국가(법적 관할구역), 산업, 기업에 따라 다르다. 또 이러한 관행과 과정은 기업 내에서도 각기 다를 수 있다(예를 들면 고객층에 따라,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관행과 과정은 고객과의 합의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 생긴다면 언제 생기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한다.

고객과의 어떤 계약은 존속 기간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 중 한 편이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계약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현재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계약의 존속 기간(계약기간)에 적용한다.

계약의 각 당사자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면, 이 기준서의 적용 목적상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계약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 ①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아직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았다.
- ②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아직 받지 않았고 아직 받을 권리도 없다.

고객과의 계약이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 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황에 유의적인 변동 징후가 없는 한 이러한 기준들을 재검토하지 않는다

고객과의 계약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기 요건이 나중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계약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고객과의 계약이 상기 요건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만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또는 대부분) 받았으며 그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 ② 계약이 종료되었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수익인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인식된 부채는 계약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미래에 이전하거나 받은 대가를 환불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에 그 부채는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금액)로 측정한다.

(2) 수행의무를 식별함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 ①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 ②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같다.
 - ①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 ②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것이다.

(3) 고객과의 계약으로 한 약속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계약 체결일에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에서 암시되는 약속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약속도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용역 제공자는 계약을 준비하기(set up) 위해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객에게 용역이 이전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 준비 활동은 수행의무가 아니다.

(4)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계약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① 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판매(예 : 제조업자의 재고자산)
- ② 기업이 구매한 재화의 재판매(예 : 소매업자의 상품)
- ③ 기업이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권리의 재판매
- ④ 고객을 위해 계약상 합의한 업무의 수행
- ⑤ 재화나 용역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예 : 사용할 수 있을 때 고객이 사용하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특정되지 않은 갱신(update)]이나 고객이 결정하는 시점에 그 결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의 제공
- ⑥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도록 주선하는 용역의 제공(다른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 수행)

- ⑦ 고객이 자신의 고객에게 재판매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이 미래에 제공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기업이 그 소매업자에게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추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한다)
- ⑧ 고객을 대신하여 자산을 건설, 제조, 개발
- ⑨ 라이선스 부여
- ⑩ 추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5) 수행의무의 이행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식별한 각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또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를 계약 개시 시점에 판단한다.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재화와 용역은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산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통제에는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자산의 효익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현금흐름(유입이 있거나 유출이 감소)이다.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한다.

1)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다음에 포함되거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6)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함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각 수행의무에는 하나의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며 비슷한 상황에서의 비슷한 수행의무에는 그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은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한다.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변동대가 추정치 중 제약받는 금액은 제외)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4. 거래가격을 산정함

(1)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고객이 약속한 대가의 특성, 시기, 금액은 거래가격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 ① 변동대가
- ②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 ③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 ④ 비현금 대가
- 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 계약은 취소·갱신·변경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2) 변동대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고객이 약속한 대가의 변동 가능성은 계약에 분명히 기재할 수도 있다. 약속한 대가는 계약 조건과 더불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도 변동될 수 있다.

- ① 고객은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이나 특정 성명(서)에 근거하여 기업이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은 대가(금액)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한다.
- ②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은 그 기업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변동대가(금액)는 다음 중에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금액)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① 기댓값

기댓값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probability-weighted) 금액의 합이다. 기업에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기댓값은 변동대가(금액)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

②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계약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결과치)이다.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예 : 기업이 성과보너스를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또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과거, 현재, 예측 정보)를 참고하고 합리적인 수에 해당하는 가능한 대가들을 식별한다. 변동대가(금액)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경영진이 입찰·제안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정할 때 사용하는 정보와 일반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3) 환불부채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

한다. **환불부채는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환불부채(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격 변동, 즉 계약부채의 변동)는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

(5)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함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지를 평가할 때는 수익의 환원 가능성 및 크기를 모두 고려한다.

각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보고기간의 상황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가격을 새로 수정한다

(6)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한다. 그 상황에서 계약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다. 금융지원 약속이 계약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약속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급조건에 암시되어 있든지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는 목적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또는 이전하는 대로)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현금판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금융효과(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인식하는 계약자산(또는 수취채권)이나 계약부채를 인식하는 정도까지만 인식한다.

(7) 비현금 대가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또는 비현금 대가의 약속)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또는 고객층)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한다.

(8)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금액)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전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5.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함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또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거래가격 배분의 목적에 맞게, 거래가격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단일 수행의무만 있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일 수행의무로 식별한,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다면 적용된다.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상 각 수행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다.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이다. 재화나 용역의 계약상 표시가격이나 정가는 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일 수 있지만, 개별 판매가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배분 목적에 맞게 거래가격이 배분되도록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한다.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할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시장 조건, 기업 특유 요소, 고객이나 고객층에 대한 정보 포함)를 고려한다. 이 때,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들을 최대한 사용하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추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